

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3년 6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1993년 6월 2일

3. 제안이유

정부가 신경제5개년계획 및 100일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, 기존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4. 주요골자

- 조례명을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를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영조례로 함.
-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규정을 개정함(안 제8조 및 제10조)
 - 용자신청 경유기관을 시장·군수에서 시장·군수·중평출장소장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충청북도지회장과 지역상공회의소회장도 할 수 있도록 함.
 - 용자조건은 대출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이내로 확대하고,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2 - 3%에서 3%내외 저리로 정함.
-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지원 규정을 신설 함(안 제13조 및 제14조)
 - 용자대상업체는
 - 자동화 추진 중소기업
 - 정보화 추진 중소기업

- 개발기술사업화 추진 중소기업
- 자동화. 정보화 동시 추진 중소기업
- 자동화. 개발기술사업화 동시 추진 중소기업
- 자동화. 정보화. 개발기술화 동시 추진 중소기업
- 기타 도지사가 성장유망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으로 함.

· 용자금리는 연 6%, 용자기간은 3년거치 5년균등할상환, 용자금액은 소요자금의 100%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· 용자대상자 선정조건은

-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체일 것
- 기업가의 경영자세가 건전하며,
- 금융거래가 정상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함

· 용자대상자 선정기준은

- 기업의 건실도를 평가한 후 성장가능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,
- 대(모)기업 추천 또는 사업파급 효과나 기술의존도가 큰 경우에는 가점을 주도록 함.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용자조례 개정안은 새정부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

6. 첨부

·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용자조례 개정조례안